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관을 달리하여 근무하는 파견, 인사교류 등 대상자에 대해 평가단위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고위공무원 평가단위 분리(안 제10조 일부개정)

- 고위공무원 성과계약 등 평가 시 파견,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 평가단위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소속 장관은 파견, 인사교류 등으로 인해 평가단위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0조(평가 방법) ① ~ ④ (생략)	제10조(평가 방법) ① ~ ④ (현재와 같음)
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. 이 경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, 하위 2개 등급(「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미흡 및 매우미흡의 등급을 말한다)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⑤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소속 장관은 파견, 인사교류 등으로 인해 평가단위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	
연 락 처	(044) 201-8406